

정 관

2026. 3. 20.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상호).....	5
제 2 조(목적).....	5
제 3 조(소재지).....	6
제 4 조(공고방법).....	6

제 2 장 주 식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7
제 6 조(일주의 금액)	7
제 7 조(주식의 종류)	7
제 8 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7
제 9 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7
제 10 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8
제 10 조의 2(동등배당)	9
제 10 조의 3(삭제)	9
제 10 조의 4(주식매수선택권)	9
제 10 조의 5(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10
제 11 조(삭제)	10
제 12 조(명의개서대리인)	10
제 13 조(주주명부 작성·비치)	10
제 14 조(삭제)	10

제 15 조(기준일)	10
-------------	----

제 3 장 사 채

제 16 조(사채의 발행)	10
제 17 조(전환사채의 발행)	11
제 18 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12
제 18 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12
제 18 조의 3(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13

제 4 장 주주총회

제 19 조(소집시기)	13
제 20 조(소집권자)	13
제 21 조(소집통지 및 공고)	13
제 22 조(소집지)	13
제 23 조(의장)	13
제 24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14
제 25 조(주주의 의결권)	14
제 26 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14
제 27 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14
제 28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14
제 29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14
제 29 조의 2(전자투표)	14
제 30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14

제 5 장 이 사·이 사 회·위 원 회

제 31 조(이사의 수).....	15
제 32 조(이사의 선임)	15
제 33 조(이사의 임기)	15
제 34 조(이사의 보선)	15
제 35 조(대표이사의 선임)	15
제 36 조(이사의 직무)	15
제 36 조의 2(이사의 보고의무)	16
제 37 조(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16
제 38 조(이사회 의 구성 과 소집).....	16
제 39 조(위원회)	16
제 39 조의 1(삭제)	16
제 39 조의 2(삭제)	16
제 39 조의 3(삭제)	16
제 40 조(위임)	17
제 41 조(이사회 의 결 의 방 법)	17
제 42 조(이사회 의 의 사 록)	17
제 43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7
제 44 조(삭제)	17

제 6 장 감 사 위 원 회

제 45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17
제 46 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18
제 47 조(감사록)	18

제 7 장 제 산

제 48 조(사업년도)	18
제 49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19
제 49 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	19
제 50 조(이익금의 처분)	19
제 51 조(이익배당)	19
제 51 조의 2(중간배당).....	20
제 52 조(배당금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20
부 칙	20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정관

제정 1976.03.08	개정 1998.03.20
개정 1976.06.15	개정 1999.03.19
개정 1976.09.06	개정 2000.03.17
개정 1976.10.12	개정 2002.03.15
개정 1977.02.24	개정 2005.03.18
개정 1977.05.24	개정 2009.03.20
개정 1978.02.02	개정 2010.03.19
개정 1979.12.20	개정 2012.03.23
개정 1985.02.28	개정 2012.12.13
개정 1986.08.14	개정 2013.03.22
개정 1987.08.14	개정 2016.03.18
개정 1988.03.18	개정 2017.03.24
개정 1989.11.15	개정 2019.03.27
개정 1990.03.27	개정 2020.03.25
개정 1991.03.22	개정 2021.03.23
개정 1996.03.08	개정 2022.03.24
개정 1997.03.07	개정 2024.03.26
	개정 2026.03.20

제 1 장 총 칙

제 1 조(상호)

본 회사는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영문으로는 LOTTE CHEMICAL CORPORATION)라 칭한다.

<개정 2012.12.13>

제 2 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6>

1. 화학제품,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및 동 가공품 또는 부산물의 제조 및 매매
2. 나프타, 석유류 및 Bio-mass 를 원료로 하는 에틸렌 등 올레핀류, 방향족류 및 그 유도품의 제조 및 매매
3. 올레핀류 및 방향족류 등을 원료로 하는 석유화학제품 제조 및 매매
4. 정밀화학 제품의 제조·가공·매매
5. 석유류의 정제 및 동제품 및 부제품의 매매
6. 자원 부국과 석유, 천연 가스 자원의 개발, 확보를 위한 사업
7. 목적 사업에 관한 회원사간의 공동 투자 사업

8. 합성섬유의 제조·가공·매매
9. 폴리에스터 및 나일론 필름의 제조·가공·매매
10. 고순도테레프탈산, 무수프탈산, 프탈산가소제, 이소프탈산 및 기타관련제품의 제조, 판매, 수출업
11. 석유화학, 화섬원료, 화섬플랜트의 수출 및 관련 용역의 제공과 투자 및 금융 제공 사업
12. 합성섬유 및 석유화학공업 제조장치 및 기계류 설계 및 제작
13.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기술 등 무형자산과 지적재산권의 관리, 라이선스, 판매 및 관련 용역사업
14. 환경과 관련한 제품 및 시설의 제조, 가공 및 매매
15. 전기 기타 “유틸리티” 시설, 정비센터, 탱크터미널, 항만, 하역설비 등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
16. 과학기술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연구의 용역과 기술정보의 매개
17. 화학공장의 공정, 정비, 운전 및 기타 기술 용역에 관한 사업
18. 수출입업, 동태행업, 및 외국상사 대리점
19. 준·관납품업
20. 각 호에 관련되는 전자 상거래 및 통신판매 관련 사업
21.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 사업
22. 부동산 임대업
23. 음식 숙박업
24.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생산하는 제품, 전기 기타 유틸리티의 제조 및 매매
25. 에너지, 수자원 관련 설비, 제품의 제조, 판매 및 관련 용역의 제공
26. 전기공사업
27.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시설운영관리업
28.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9. 토목 및 건설자재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시공업
30. 운송장비용 수소 및 기타 가스 충전업
31. 초경량 복합재료 가스용기 제조 및 판매 사업
32.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투자 및 기타 투자 관련 사업
33. 수소 및 수소화합물 등의 제조, 판매 및 관련 용역의 제공 등 부대사업
34. 위 각호에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

제 3 조 (소재지)

- ① 본 회사는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다.
-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 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lottechem.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개정 2013.3.22>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 억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 일주당 액면금액은 금 5 천원정도로 한다.

제 7 조 (주식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8 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16.03.18>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개정 2016.03.18>
- ③ 우선주식은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 배당 우선권을 가지는 주식을
독립적으로 또는 여러 형태로 조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03.18>
- ④ 제 3 항에 의하여 참가적 우선주식을 발행할 경우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 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개정 2016.03.18>
- ⑤ 제 3 항에 의하여 누적적 우선주식을 발행할 경우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개정 2016.03.18>
- ⑥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⑦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⑧ 이사회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고,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우선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개정 2021.03.23>

제 9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제외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개정 2019.3.27>

제 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본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개정 2016.03.18>

② 제 1 항 제 3 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개정 2016.03.18>

③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9 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6.03.18>

④ 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신설 2016.03.18>

⑤ 본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신설 2016.03.18>

⑥ 본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신설 2016.03.18>

- ⑦ 회사는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03.18>

제 10 조의 2 (동등배당)

본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개정 2021.03.23>

제 10 조의 3 (삭제 2016.03.18)

제 10 조의 4 (주식매수선택권)

- ① 본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 30 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본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본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본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 7 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원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 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재임 또는 재직기간에도 불구하고 제 5 항에 정한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⑦ (삭제 2021.03.23)
- ⑧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6.03.18>

제 11 조 (삭제)

제 12 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개정 2012.3.23>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은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개정 2019.3.27>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03.23>

제 13 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① 본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본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3.23>

제 14 조 (삭제 2019.3.27)

제 15 조 (기준일)

① (삭제 2021.03.23)

②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개정 2016.03.18>

③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회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20>

제 3 장 사 채

제 16 조 (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결정하고, 대표이사에게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그 실행을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3.18>

제 17 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2 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03.24>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0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 10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6.03.18>

- ② 제 1 항 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신설 2016.03.18>

- ③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의 결의로써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17.03.24>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 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의 결의로써 전환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개정 2021.03.23.>

제 18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2 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03.24>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0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 10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6.03.18>

- ② 제 1 항 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신설 2016.03.18>

-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17.03.24>
-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삭제 2021.03.23)

제 18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제외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

자등특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03.23>

제 18 조의 3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개정 2019.3.27>

제 12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19 조 (소집시기)

-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0 조 (소집원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 36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03.18>

제 21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20>
- ②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03.20>

제 22 조 (소집지)

- ①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 이외에 의왕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03.20>
- ② 본 회사는 상법 제 542 조의 14 제 1 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 <신설 2026.03.20>

제 23 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 36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03.18>

제 24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 25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

제 26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7 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8>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또는 전자문서를 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20>

제 29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9 조의 2 (전자투표)

본 회사는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여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1.03.23>

제 30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이사회·위원회

제 31 조 (이사의 수)

-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6.03.20>
 - ② 본 회사의 독립이사는 3인 이상으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26.03.20>
 - ③ 본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 <신설 2021.03.23>

제 32 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독립이사는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6.03.20>
- ② 이사의 선임은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26.03.20)

제 33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되는 경우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다만,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로 이보다 단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03.20>

제 34 조 (이사의 보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 31 조에서 정하는 인원 수를 미달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3.18>
-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③ 독립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31 조에서 정하는 인원수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20>

제 35 조 (대표이사의 선임)

본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 36 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업무를 총괄하고,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6.03.18>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결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3.18>

제 36 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7 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정)

-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이사의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 배(독립이사의 경우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03.20>
-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 조 (경업금지),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03.20>

제 38 조 (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대표이사(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는 회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이사회를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03.18>
- ③ 이사회 의 의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 39 조 (위원회)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 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03.18>
 - 1. (삭제 2016.03.18)
 - 2. 감사위원회
 - 3.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정 2026.03.20>
 - 4. 투명경영위원회 <신설 2016.03.18>
 - 5. 보상위원회 <신설 2020.03.25>
 - 6. ESG위원회 <신설 2021.09.16>
 - 7.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 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다. <개정 2016.03.18>
- ③ 위원회에 관하여는 제 38 조, 제 40 조 내지 제 42 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03.18>

제 39 조의 1 (삭제 2016.03.18)

제 39 조의 2 (삭제 2016.03.18)

제 39 조의 3 (삭제 2021.03.23)

제 40 조 (위임)

이사회는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의 결의로써 대표이사 및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 41 조 (이사의 결의방법)

- ① 이사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 제 398 조 및 제 415 조의 2 제 3 항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개정 2016.03.18>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03.18>
- ③ 이사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이사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42 조 (이사의 의사록)

- ① 이사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3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4 조 (삭제)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45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전원 독립이사로 한다. <개정 2026.03.20>
-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20>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21.03.23>
- ⑤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 434 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3

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개정 2021.03.23>

- ⑥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6.03.20>
 - ⑦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23>
 - ⑧ 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2 항의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 2 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03.23>
- <본조신설 2016.03.18>

제 46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①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대표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9.3.27>
 - ⑦ 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6 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6.03.18>

제 47 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3.18>

제 7 장 제 산

제 48 조 (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49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연결재무제표 <신설 2012.3.23>
 4.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개정 2012.3.23>
-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 주주총회의 1 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24.03.26)
- ④ (삭제 2024.03.26)
- ⑤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점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24.03.26>

제 49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회사는 해당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7>

제 50 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 사업년도 말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51 조 (이익배당)

- ①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 분의 1 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03.18>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

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6>

제 51 조의 2 (중간배당)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 462 조의 3 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03.26>

②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6>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삭제 2021.03.23)

<본조신설 2016.03.18>

제 52 조 (배당금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1991.03.22)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1991 년 3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3.08)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1996 년 3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0 조의 2, 제 14 조, 제 29 조, 제 32 조, 제 35 조의 2, 제 36 조, 제 37 조, 제 40 조, 제 46 조의 개정규정은 1996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에 관한 적용예)

제 16 조 및 제 17 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03.07)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1997 년 3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3.20)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1998 년 3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3.19)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1999 년 3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3.17)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0 년 3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3.15)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2 년 3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3.18)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5 년 3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3.20)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9 년 3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3.19)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0 년 3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정관 개정 전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개정 전 정관에 의하기로 한다.

부 칙 (2012.03.23)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2 년 3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4 조의 개정내용은 2012 년 4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13)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2 년 12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3.22)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3 년 3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3.18)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6 년 3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3.24)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7 년 3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3.27)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9 년 3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9 조, 제 12 조, 제 14 조, 제 18 조의 2 및 제 18 조의 3 의 개정 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하되, 구 정관(2019 년 3 월 27 일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 조, 제 12 조, 제 14 조 및 제 18 조의 2 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게 적용된다.

부 칙 (2020.03.25)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0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3.23)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1 년 3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3.24)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2 년 3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3.26)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4 년 3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03.20)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6 년 3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 22 조 제 2 항 및 제 28 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202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 31 조 제 2 항, 제 32 조 제 1 항, 제 34 조 제 3 항, 제 37 조 제 1 항, 제 39 조 제 1 항 제 3 호, 제 45 조 제 2 항(독립이사 명칭에 관한 내용에 한함)의 개정규정은 2026 년 7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부칙 제 1 조에도 불구하고, 2026 년 7 월 23 일 이전까지 본 정관 내 독립이사는 「상법 (법률제 20991 호)」 제 542 조의 8 에 따른 사외이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제 4 조 (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

제 32 조(독립이사 명칭에 관한 부분은 제외)의 개정규정은 2026 년 9 월 10 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 5 조 (감사위원 선, 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 45 조 제 6 항의 개정규정은 2026 년 7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